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(　　)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
신청인	법인명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 :)	
	대표자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 :)	
업소명		
소재지		
허가 번호		허가 연월일
변경 사항	변경 전	
	변경 후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청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경 찰 청 장
시·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허가증 2.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3.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4. 설계도면 1부(제조 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5,000원

작성방법

1.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.
2.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.
   가.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
   나. 제조방법
   다.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종류와 그의 사용방법·성능 및 특징
   라.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
   마. 원료화약의 조달 및 저장방법
   바.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
   사. 자본금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